

## 2021 국산 탄소소재 활용 전주기 상용화 사업 모집공고

효성 탄소섬유 수요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우수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산 탄소소재 활용 전주기 상용화사업을 실시하여 참가지원을 원하는 기업을 공모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1 국산 탄소소재 활용 전주기 상용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효성 탄소섬유 수요기업 발굴·육성 및 전주기 지원을 통한 성장 가속화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1년 12월 31일
- 공고일정 : 2021년 5월 31일(월) ~ 2021년 6월 21일(월) 18:00
- 접수일정 : 2021년 5월 31일(월) ~ 2021년 6월 21일(월) 18:00

### 2. 지원대상

- 도내·외 탄소섬유 관련 상용화 기술 개발·보유하여 사업화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기업 (중견/대기업 제외)
- ※ 2019년 중견기업 범위해설(산업통상자원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참조

### 3.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선정규모 : 효성 탄소섬유 수요기업 관련 6개사 내외
  - 선정방법 : 예산액 한도 내에서 평가를 통하여 선정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기업별 차등지원) / \*부가세 제외

○ 지원내용

- 효성탄소소재 제품 사업화(제품 개발비 등)
- 효성탄소소재 구매지원(중간재 개발, 제품사업화 성공기업 대상)
- 사업화 공간 제공(효성탄소창업보육센터 1층 내\_도외기업 대상)
- 협력지원(기술제휴, 판로개척, 전문가 활용 등)
- 사업연계(효성동반사업 탄소강소기업 지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중간재 개발지원)

※사업공고 후 접수기업 미달 시, 사업 재공고 진행

※사업연계의 경우, 각 사업주체의 운영지침 따름

- 지원금의 10~50% 수준으로 기업 대응자금(현금)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구성, 사업비에는 VAT 불포함

<세부구성 내용>

| 지원내용                | 기업대응자금 기준                      | 기업 대응자금 | 총사업비               |
|---------------------|--------------------------------|---------|--------------------|
|                     |                                | 현금      |                    |
| 사업화자금<br>(제품 개발비 등) | ○ 탄소사업화기업* :<br>총 지원금의 30%     | 30%     | 지원금<br>+<br>기업대응자금 |
|                     | ○ 탄소지정기업** :<br>총 지원금의 20%     | 20%     |                    |
|                     | ○ 우수 탄소기업*** :<br>총 지원금의 10%   | 10%     |                    |
| 탄소소재<br>구매지원        | ○ 소재구매지원기업**** :<br>총 지원금의 50% | 50%     |                    |

\* 탄소사업화기업 : 도내·외 탄소섬유 관련 상용화 기술 개발·보유하여 사업화를 운영 중인 중소(창업)기업

\*\* 탄소지정기업 :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인정하는 탄소기업

\*\*\* 우수 탄소기업 : 탄소지정기업 대상 중 우수 탄소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으로 우수탄소기업 지정서를 받은 기업

\*\*\*\* 소재구매지원기업 : 효성 탄소소재 중간재 개발 및 제품사업화 성공기업

- 지원금은 완료보고(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서류 등) 후 100% 지급

○ 사업일정

| 단계 | 내용              | 일정                  | 비고              |
|----|-----------------|---------------------|-----------------|
| 1  | 공고 및 신청접수       | '21. 05월~'21. 06월   | 온-오프라인 홍보       |
| 2  | 서면평가            | '21. 06월            |                 |
| 3  | 현장실사 및 대면평가     | '21. 06월            |                 |
| 4  | 최종 지원기업 선정      | '21. 06월            | 6개사 내외          |
| 5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 | '21. 07월            | 사업비 차등 지원       |
| 6  | 사업화 지원          | '21. 07월 ~ '21. 12월 |                 |
| 7  | 중간점검            | '21. 10월            | 사업진행사항 공유 /중간정산 |
| 8  | 최종 결과보고         | '21. 12월            | 사업비 최종정산        |

※ 기재된 일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4. 선정방식

### □ 선정방식 [각 단계별, 평가 점수 70점 이상 기업 선정]

- (1단계: 서면평가) 서면평가(100점), 2단계 대상기업 선정/ (2배수 이내 선정)
- (2단계: 현장평가) 현장실사(30점) + 발표평가(70점), 최종 지원기업 선정

### □ 서면평가

- (평가목적)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검토를 통해 현장평가기업 선정
- (평가기준) 4개 항목 총점 100점 배점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
| 1. 적합성      | 1-1. 효성 탄소섬유 수요기술 활용 적합성 | 15점         |
|             | 1-2. 잠재적인 탄소섬유 소요 규모     | 15점         |
| <b>소 계</b>  |                          | <b>30점</b>  |
| 2. 기술성      | 2-1. 보유·개발 기술의 혁신성       | 10점         |
|             | 2-2. 기술 개발 단계 도달 수준      | 10점         |
| <b>소 계</b>  |                          | <b>20점</b>  |
| 3. 시장성      | 3-1. 사업 아이템의 시장 규모       | 15점         |
|             | 3-2. 시장 경쟁력 확보 및 강화방안    | 15점         |
| <b>소 계</b>  |                          | <b>30점</b>  |
| 4. 성장전략     | 4-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10점         |
|             | 4-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10점         |
| <b>소 계</b>  |                          | <b>20점</b>  |
| <b>총 합계</b> |                          | <b>100점</b> |

### □ 현장평가 [① 현장실사]

- (평가목적) 대표자의 기업가정신 및 사업 수행의 인성적 요소, 기업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현장 평가 시행
- (평가방식) 현장실사 중 대표자 인터뷰 실시(인터뷰 10분)
- (평가기준) 2개 항목 총점 30점 배점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
| 1. 대표자 전문성  | 1-1.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 1-2. 관련 기술, 상용화 관련 전문지식 보유 여부 등 | 10점        |
| <b>소 계</b>  |                                 | <b>20점</b> |
| 2. 사업수행 의지  | 2-1. 사업비 집행 계획, 추진 방향의 적정성      | 5점         |
|             | 2-2. 대표자의 경영관리 능력, 향후 발전 계획 등   | 5점         |
| <b>소 계</b>  |                                 | <b>10점</b> |
| <b>총 합계</b> |                                 | <b>30점</b> |

□ **현장평가 [② 발표평가]**

- (평가목적)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발표평가 자료를 작성·제출 후 발표평가 시행
- (평가방식) 현장에서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평가기준) 3개 항목 총점 70점 배점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
| 1. 사업운영 현황     | 1-1. 사업장 보유, 직원규모, 생산 설비 등의 적정성 | 5점         |
|                | 1-2. 보유기술에 대한 권리, 지식재산권 현황      | 5점         |
| <b>소 계</b>     |                                 | <b>10점</b> |
| 2. 재무건전성       | 2-1. 자본금 및 차입금 등 자산규모의 적정성      | 5점         |
|                | 2-2. 영업이익, 매출증가율 등 사업성          | 5점         |
| <b>소 계</b>     |                                 | <b>10점</b> |
| 3. 사업계획서와 부합여부 | 3-1. 서면평가 내용과 실제 운영내용의 부합성      | 25점        |
|                | 3-2. 제출서류 등 사업계획서 일치성           | 25점        |
| <b>소 계</b>     |                                 | <b>50점</b> |
| <b>총 합계</b>    |                                 | <b>70점</b> |

- (최종선정) 총 6개 내외 지원 대상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을 통한 기업지원

**5. 지원 계획**

- (사업화자금 지원)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기업별 차등지원)

| 비목           | 사업비 비중 | 집행기준   |
|--------------|--------|--|
| 재료비          | 45% 수준 | 사업계획서상의 제품 제작, 아이템 검증 시 필요한 재료·원료 구입   |
| 외주<br>용역비    | 45% 수준 | 선정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용역비 등  |
| 마케팅/<br>인증 등 | 10% 수준 |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참가비, 시험·인증비<br>홈페이지·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홍보영상제작비, 온라인쇼핑몰 입점비, 온라인홍보비, 카탈로그 제작비, 기타 마케팅비 등 |

- (탄소소재 구매지원)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기업별 차등지원)

| 비목  | 집행기준                           |
|-----|--------------------------------|
| 재료비 | 효성 탄소소재 중간재 개발 및 제품사업화 성공기업 대상 |

※ 세부내용은 “ 2020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따른다.

## 6. 접수일정

- 공고기간 : 2021년 5월 31일(월) ~ 2021년 6월 21일(월) 18:00
- 접수기간 : 2021년 5월 31일(월) ~ 2021년 6월 21일(월) 18:00
- 접수방법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온라인 접수
  - ※ 신청양식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온라인 신청플랫폼(<http://event.jbcj.or.kr>) - 2021 국산 탄소소재 활용 전주기 상용화 사업 모집공고 - 신청하기
  - \_ 사업 지원 신청 : 공고문, 신청서 다운로드 및 온라인업로드 신청서 수정 및 확인
  - \_ 공고 마감일까지 수정가능 , 접수확인
  - \_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신청시 설정 비밀번호 ( 숫자 4-8 자리 ) 입력 후 본인 신청내용 확인 가능
-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 접속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 '온라인 신청 플랫폼' 접속이 차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동반성장팀 김수빈사원 (063-220-8920)
- 구비서류
  - 「2021 국산 탄소소재 활용 전주기 상용화 사업」 참가신청서 1부
  - 「2021 국산 탄소소재 활용 전주기 상용화 사업」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신분증 사본 1부
  - 사업추진관련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사업 선정 후 제출)
  - 기타 증빙서류(탄소지정기업, 우수탄소기업 등)

| 구 분                  | 목 록   | 비 고              |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신청서</li> <li>• 사업계획서</li> <li>•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li> </ul>   | 신청 시 제출          |
| 자격요건 증빙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신분증 사본(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학생증 불가)</li> </ul> </li> <li>-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의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사실 여부 확인(직원 제외)</li> <li>** 발급절차 : 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li> </ul> </li> <li>-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사실이 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에 폐업 사실이 있을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제출</li> <li>** 발급절차 : 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폐업사실증명</li> </ul> </li> </ul> </li> <li>•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li> <li>•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li> <li>• 지식재산권 : 특허증, 특허출원증, 기타 각종 인증 증빙자료 등</li> </ul> |                  |
| 실적 증빙서류<br>(해당자에 한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li> <li>• (수출) 수출실적 증명원(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계약서, 해외특허등록서, 국제인증서, 국제협약서, 글로벌 홍보물 관련 이미지 사본 등</li> <li>• (투자) 투자계약서(투자금액 포함), 주주명부, 투자금액 입금 통장 사본 등</li> <li>• (고용) (동 사업 신청기업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li> <li>** 기고용 인력 중 동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 제출</li> </ul> </li> </ul> <p>※ 사업계획서 내 매출, 수출, 투자, 고용 실적을 작성한 경우 해당 증빙 제출</p>  | 현장<br>실사 시<br>제출 |

※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표절 및 관련 법규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

※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7. 선정기업 의무사항

- 신청자는 참가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확인 후 「2021 국산 탄소소재 활용 전주기 상용화 사업」이 지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지원 하여야함
- 선정기업은 「2021 국산 탄소소재 활용 전주기 상용화 사업」 통합관리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함
  - 지침·기준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 기업에게 있음
- 지원기업은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거나 허위사실에 의거하여 선정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협약(선정) 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년도 다음해부터 5년간 지원성과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8. 선정(지원)제외 대상

-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구분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
|----|---|--------|
| 1  | 금융 및 보험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 K64~66 |
| 2  | 부동산업                                      | L68    |
| 3  | 숙박 및 음식점업                                 | I55~56 |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 6  |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 9124   |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 96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http://kssc.kostat.go.kr)) 참고

- 대·중견기업 기준

|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 규모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규모기준 충족</li> <li>AND</li> <li>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규모기준 초과 (금융업 및 보험업 제외)</li> <li>OR</li> <li>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li> </ul> |  |
| 독립성기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 좌동  |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br><br>②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
|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 아닐 것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 아닐 것<br><b>(지배기업으로 비영리법인 포함)</b>   |  |
|       |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하는 기업   |  |
|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 공정거래위원회  |
| 확인방법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 지정 및 통지(공문)                                      |
|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 기업집단포털 (www.eroup.go.kr)                         |
| 문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
|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2019년 중견기업 범위해설(산업통상자원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끝.